

#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7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4. 10. 1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임식의원 외 5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4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10. 8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동 조례의 상위관련 법규중 지방공기업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
- 동조례의 관련 규정을 관련법 조항과 맞게 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동조례 제5조제1항제5호중 “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” 를 “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” 으로 변경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의 제5조제1항제5호의 관련법규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된 법조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 조문과 맞게 개정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### 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### 6. 토 론 : 없음

### 7. 심사결과

- 2004. 10. 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